

# 인천광역시 어린이과학관 설립과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2010. 10. 1(금)

문화복지위원회

##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 2010. 8. 19

나. 제안자 : 인천광역시장

다. 회부일자 : 2010. 8. 20

라. 상정일자 : 2010. 9. 9(제187회 제1차 정례회 제5차 문화복지위원회)

- 제안설명 : 가정복지국장 장부연
- 검토보고 : 문화복지전문위원 유한경
- 질의 및 토론
- 수정가결

## 2. 제안설명의 요지

### 가. 제안이유

- 「과학관육성법」 제23조에 따라 관리운영 조례를 제정하여, 과학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운영하고자 함

### 나. 주요내용

- 인천광역시 어린이과학관의 목적, 설치, 위치 및 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
- 인천광역시 어린이과학관 부대시설의 사용허가 및 사용료 징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4조)

- 인천광역시 어린이과학관의 개관 및 운영시간을 규정함(안 제5조부터 6조까지)
- 「과학관 육성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관람료 징수 금액 기준 및 감면 기준을 규정함(안 제7조)
- 인천 어린이과학관의 관람금지, 행위제한, 사용허가 취소, 손해배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8조부터 11조까지)
- 인천광역시 어린이과학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위탁운영에 관한 법적근거를 마련하고, 위탁운영에 따른 경비의 지원, 지도·감독, 위탁의 취소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안 제12조부터 제15조까지)

###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 가. 경 위

인천광역시 어린이과학관 설립과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2011년 5월 개관을 앞두고 있는 인천광역시 어린이과학관의 관리 운영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인천광역시장이 2010년 8월 19일 제출하여 8월 20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됨.

#### 나. 인천광역시 어린이 과학관 개요

- 위 치 : 인천광역시 계양구 방축동 108-1번지 일원
- 사업기간 : 2009. 4월 ~ 2011. 4월
- 사업규모 : 부지21,688㎡, 건물14,998㎡(지상3층, 지하1층)
- 주요시설 : 연령별 1~5군 전시시설, 4D영상관, 어린이도서관, 강당, 야외공연장, 옥외 전시시설 및 편의시설 등
- 사 업 비 : 77,487백만원

(단위:백만원)

구 분	총사업비	2008	2009	2010 <sup>1)</sup>	2011	비 고
합 계	77,487	10,000	20,000	18,266	29,221	
시 비	43,537	-	-	14,316	29,221	
지방채	33,950	10,000	20,000	3,950	-	

- 현재 추진사항 : 내부 마감공사 / 기계공사(공정율 : 약 55%)
- 향후 추진계획 : 2011. 4월 준공 및 시범운영  
2011. 5월 개관

## 다. 주요 내용

### 1) 제3조 (사업)

- 어린이과학관은 전국 최초의 특성화된 어린이 전문과학관으로서 기존 과학관의 목적인 ‘수집 및 전시, 관람’의 기능을 확대하여 ‘직접 참여하고 체험하는 프로그램 운영’을 기본 목표로 설정하고 여가와 문화의 과학센터의 역할을 표방하고 있음.
- 제3조(사업)은 『과학관육성법』 제5조(사업)의 조문을 인용하여 관련 법령의 범위 내에서 규정하였음.

### 2) 제4조 (사용허가)

- 안 제4조 제1항은 과학관 임대 또는 사용 허가에 대한 사항이고, 제2항은 사용료 부과·징수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으므로, ‘사용허가’로 한정되어 있는 조의 제목을 ‘사용허가 등’으로 변경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 조례의 체계상 제4조(사용허가)와 제10조(사용허가의 취소)를 함께 배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 제4조를 제9조로 이동하고
- 제5조~제9조는 제4조~제8조로 이동 배치하는 것이 타당할 것임.
- 별표 1의 인천광역시 어린이과학관 부대시설 사용료 (제4조 관련)은 (제9조 관련) 등으로 수정.

### 3) 제5조 (개관 및 휴관)

- 안 제5조는 『국립박물관 전시품 관람규칙』 (문화체육관광부령 제44호) 등 유관 법령에 준하여 규정한 것으로 보이며,

---

1) 2010회계연도 제2회 추경 기준(예정)

당초 입법예고안에서는 설과 추석을 정기 휴관일에 포함하였다가 최종적으로 이를 제외하였음.

통상 명절 당일에는 대부분의 기관·시설이 휴관하는 것이 관례인 반면, 박물관이나 고궁 등은 다양하고 특색 있는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가족 단위의 시민들이 많이 찾고 있는 바, 어린이 과학관도 명절 개관을 통해 시민의 이용 활성화와 과학의 저변 확대를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됨.

#### 4) 제7조 (관람료) 및 별표 2

- 안 제7조 제1항에서는 『과학관육성법』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관람료를 책정하였으며, 특히 인천광역시민에 한하여 상설전시관 개인 관람료의 50%를 감면하는 규정은 인천 시민의 이용도를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사료됨.

- 안 제7조 제2항은 관람료 면제에 대한 규정으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각 개별 법령에서 국·공립 박물관 및 미술관 등의 시설을 무료로 이용하게 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이를 기준으로 감면 규정을 마련한 것임.

다만, 어린이과학관은 어린이들에 대한 교육과 놀이의 복합적 공간으로서 소외받는 어린이와 지역 주민을 위해 추후 국민기초수급자나 한부모가족 등 저소득층에 대한 감면규정도 고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됨.

- 향후 특별 및 기획전시, 대관전시 및 외부 기관·단체 등과의 공동 개최 전시 등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바, 이에 대한 별도요금 부과 규정을 별표에만 명기함으로써 인천시민에 대한 감면 적용 범위에 대해 혼란을 초래할 우려가 있으며, 특히, 제2항에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관람료를 면제한다.’라고 규정함으로써 기획전시나 대관전시 등도 전액 면제되는 것으로 오해할 소지가 있으므로 단서 조건을 신설하여 적용 범위를 명확하게 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사료됨.

## 5) 제12조(위탁관리운영)

- 안 제12조는 과학관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기술과 능력을 갖춘 기관, 법인, 단체에게 3년 이내의 기간으로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과학관은 전시·연구 전문인력 확충 등 전문성 강화가 필수적이며, 교육과학기술부에도 2013년까지 과학관 구성인력의 40% 수준까지

전문 인력을 확대하는 목표<sup>2)</sup>를 추진하고 있는 등 전문성 확보에 주력하고 있으므로, 본 과학관의 성공적인 운영을 위해서 전문성을 확보한 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한 것으로 사료됨.

### ※ 인근 유사 기관 현황

명 칭	위 치	규 모	개관일	운영 방식	입장료	관람객	비고
국립 생물자원관	인천 서구 경서동	지상3층 27,724m <sup>2</sup>	2007년	국립 (직영)	무료	33만	환경부
인천 학생과학관	인천 중구 운서동	지하1/지상6층 3,630m <sup>2</sup>	2007년	공립 (직영)	무료	12만	인천시 교육청
옥토끼 우주센터	인천 강화군 불은면	지상4층 3,960m <sup>2</sup>	2007년	사립 (직영)	12,000~ 15,000원	18만	사설
국립 과천과학관	경기도 과천시	지상3층 49,050m <sup>2</sup>	2008년	국립 (직영)	1,500~ 4,000원	100만 이상	교과부
국립 서울과학관	서울 종로구	지상5층 16,221m <sup>2</sup>	1972년	국립 (직영)	1,000~ 1,500원	70만	“
서울 과학전시관	서울 관악구	지상3층 8,864m <sup>2</sup>	1989년	공립 (직영)	무료	70만	서울시 교육청

2) 교육과학기술부 <제2차 과학관 육성 기본계획>(2009. 6월) : 중점 추진과제의 하나로 과학관 운영인력 전문성 강화 추진

## 4. 질의 및 답변요지

### < 질 의 >

- 이강호 · 안영수 · 신현환 · 강병수 · 박순남 · 박승희 · 이상철 · 이용범 위원
  - 감면대상에 국민기초수급자나 한부모가족 등 취약계층을 포함하지 않은 사유는?
  - 교통 혼잡에 대한 대책과 주차장 확보 현황은?
  - 위탁에 대한 계획과 전문성 확보를 위한 방안은 무엇이며, 위탁 시 운영 계획을 철저히 수립하여 수탁자가 운영난을 떠안는 일이 없도록 하고, 전문성 제고에 대한 규정을 명문화하도록 조치 바람.
  - 과학관 육성법에 단체 감면 기준이 30명이나 본 조례안에서는 20명으로 정한 사유는?

### < 답 변 >

- 가정복지국장 장부연
  - 취약계층에 대한 감면은 제7조 제2항 14호에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의 범위에 포함시켜 우선 감면 조치하고, 추후 조례 개정 시 고려하겠음.
  - 교통문제 해결을 위해 비좁은 입구 개선과 주차장 확보를 위해 도시계획 변경 건의 등 노력하겠음.
  - 위탁은 공모를 통해 시설관리공단이나 관광공사 등 지방공기업 위주로 위탁을 진행할 예정으로, 위탁 조건에 전문직 인력확보와 전문성을 갖출 수 있도록 규정을 마련하고 원활한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음.
  - 단체 범위를 20명으로 정하여 이용자들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감면 대상 범위를 확대한 것임.

## 5. 토론요지

가. 찬성 : 없 음

나. 반대 : 이강호·안영수·신현환·강병수·박순남·박승희·이상철·이용범 위원

## 6. 수정안 요지

- 안 제4조를 제9조로 하고 제목 “(사용허가)”를 “(사용허가 등)”으로 한다.
- 안 제5조부터 제6조까지를 각각 제4조부터 제5조까지로 한다.
- 안 제7조를 제6조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제4항으로 하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③ 시장은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특별 및 기획 전시 또는 외부 기관이나 단체 와 공동으로 개최하는 전시 등의 경우에는 이를 따로 정한다.
- 안 제8조를 제7조로 하고, 제9조(종전의 제9조)를 제8조로 한다.
- 안 제13조의 제목 “(경비지원 등)”을 “(경비지원)”으로 한다.
- 안 [별표 1]을 [별표 2]로 하고 제목 중 “(제4조 관련)”을 “(제9조 관련)”으로 한다.
- 안 [별표 2]를 [별표 1]로 하고 제목 중 “(제7조 관련)”을 “(제6조 관련)”으로 한다.

## 7. 심사결과

- 수정가결(재석의원 전원찬성)

## 8. 기타사항

- 특이사항 없음.

붙임 : 1. 수정안 1부.

2. 수정안 조문 대비표 1부.

3. 인천광역시 어린이과학관 설립과 운영에 관한 조례안 1부. 끝.

# 인천광역시 어린이과학관 설립과 운영에 관한 조례안 수정안

인천광역시 어린이과학관 설립과 운영에 관한 조례안 중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4조를 제9조로 하고 제목 “(사용허가)”를 “(사용허가 등)”으로 한다.

안 제5조 및 제6를 각각 제4조 및 제5조로 한다.

안 제7조를 제6조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제4항으로 하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시장은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특별 및 기획 전시 또는 외부 기관이나 단체 와 공동으로 개최하는 전시 등의 경우에는 이를 따로 정한다.

안 제8조를 제7조로 하고, 제9조(중전의 제9조)를 제8조로 한다.

안 제13조의 제목 “(경비지원 등)”을 “(경비지원)”으로 한다.

안 [별표 1]을 [별표 2]로 하고 제목 중 “(제4조 관련)”을 “(제9조 관련)”으로 한다.

안 [별표 2]를 [별표 1]로 하고 제목 중 “(제7조 관련)”을 “(제6조 관련)”으로 한다.



# 수정안 조문대비표

제 정 안	수 정 안
<p>제4조(사용허가) ① 과학관을 임대 또는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p> <p>② 시장은 과학관의 임대 또는 사용을 허가하는 경우에는 별표 1에서 정하는 사용료를 부과·징수하여야 한다. 다만, 인천광역시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에 한하여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p>	<p><u>제9조(사용허가 등)</u> ①~② (제정안과 같음)</p>
<p><u>제5조(개관 및 휴관)</u> ① 과학관은 다음 각 호의 휴관일을 제외하고는 매일 개관을 원칙으로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li>1. 1월 1일, 설날연휴기간, 추석연휴기간</li><li>2. 월요일(다만, 공휴일과 겹치는 월요일은 익일 휴관)</li><li>3. 그 밖에 시장이 관리운영상 휴관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날</li></ol> <p>② 시장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휴관일에 개관할 수 있다.</p>	<p><u>제4조(개관 및 휴관)</u> (제정안 제 5조와 같음)</p>
<p><u>제6조(관람 및 대표시간)</u> ① 과학관의 관람 및 대표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li>1. 관람시간 :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li><li>2. 대표시간 :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li></ol>	<p><u>제5조(관람 및 대표시간)</u> (제정안 제 6조와 같음)</p>

제 정 안	수 정 안
<p>② 시장은 국민 및 외국사절단의 관람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관람시간 및 매표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p> <p><u>제7조(관람료)</u> ① 과학관을 이용하려는 자는 별표 2에서 정한 관람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인천광역시민에 한하여 상설전시관 개인관람료의 50퍼센트를 감면한다.</p> <p>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관람료를 면제한다. 1.~14. (생략)</p> <p style="text-align: center;"><u>&lt;신 설&gt;</u></p> <p>③ 이미 징수한 관람료는 과학관의 귀책사유가 없는 한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다.</p> <p><u>제8조 (관람의 금지)</u>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관람을 금지할 수 있다. 1. ~ 6. (생략)</p>	<p><u>제6조(관람료)</u> ①~② (제정안과 같음)</p> <p>③ <u>시장은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특별 및 기획 전시 또는 외부 기관이나 단체 와 공동으로 개최하는 전시 등의 경우에는 이를 따로 정한다.</u></p> <p>④ (제정안 제3항과 같음)</p> <p><u>제7조 (관람의 금지)</u> (제정안 제 8조 와 같음)</p>



# 인천광역시 어린이과학관 설립과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과학관육성법」 제23조에 따라 어린이의 과학에 대한 탐구심을 함양하고, 과학기술에 대한 이해증진에 이바지하고자 건립한 인천광역시 어린이과학관의 관리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치) 인천광역시 어린이과학관(이하 “과학관”이라 한다)은 인천광역시 계양구 방축동 108-1번지에 둔다.

제3조(사업) 과학관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과학기술자료의 발굴·수집·보존·관리 및 전시
2. 과학기술자료에 대한 전문적·학술적인 조사·연구
3. 과학기술교육프로그램의 개설·운영
4. 과학기술자료에 관한 각종 간행물의 제작·배포
5. 국내·외의 다른 과학관과의 과학기술자료·간행물 또는 정보의 교환 및 공동연구 등의 협력
6. 그 밖에 과학관의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정하는 사업

제4조(개관 및 휴관) ① 과학관은 다음 각 호의 휴관일을 제외하고는 매일 개관을 원칙으로 한다.

1. 1월 1일
2. 월요일(다만, 공휴일과 겹치는 월요일은 익일 휴관)

3. 그 밖에 시장이 관리운영상 휴관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날

② 시장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휴관일에 개관할 수 있다.

제5조(관람 및 매표시간) ① 과학관의 관람 및 매표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관람시간 :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2. 매표시간 :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② 시장은 국민 및 외국사절단의 관람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관람시간 및 매표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6조(관람료) ① 과학관을 이용하려는 자는 별표 2에서 정한 관람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인천광역시민에 한하여 상설전시관 개인관람료의 50퍼센트를 감면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관람료를 면제한다.

1. 국민 및 그 수행자

2. 외교사절단 및 그 수행자

3. 보호자를 동반한 6세 이하의 어린이

4. 65세 이상의 노인

5.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으로 장애등급이 1급부터 3급까지 장애인과 동행하는 보호자 1명

6.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7.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독립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8.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5·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9. 「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수임무수행자와 유족

10.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참전유공자
  11.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12. 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공무원
  13. 교육자료를 수집하기 위하여 출입하는 교원으로서 학교장의 협조 요청이 있는 자
  1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 ③ 시장은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특별 및 기획 전시 또는 외부 기관이나 단체 와 공동으로 개최하는 전시 등의 경우에는 이를 따로 정한다.
- ④ 이미 징수한 관람료는 과학관의 귀책사유가 없는 한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7조(관람의 금지)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관람을 금지할 수 있다.

1. 술에 취한 자
2. 보호자를 동반하지 아니한 6세 이하의 어린이
3. 악취 또는 혐오감을 주는 물품을 소지한 자
4. 화재의 위험이 있는 인화성 물질, 화학류 등을 소지한 자
5. 애완동물을 데리고 입장하는 자
6. 그 밖에 시장이 시설물 및 전시품의 보호, 공공질서 유지 등을 위하여 관람금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제8조(행위의 제한) ① 관람자는 과학관 전시실 안에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흡연 또는 음주행위
2. 전시물을 손상하는 행위
3. 고성·난무하는 행위
4. 그 밖에 시장이 행위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위

② 시장은 관람자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퇴관 조치를 할 수 있다.

제9조(사용허가 등) ① 과학관을 임대 또는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시장은 과학관의 임대 또는 사용을 허가하는 경우에는 별표 1에서 정하는 사용료를 부과·징수하여야 한다. 다만, 인천광역시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에 한하여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제10조(사용허가의 취소)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과학관의 사용허가를 취소·정지하거나 그 사용을 제한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사용허가 목적에 위반된 때
2. 건물, 기물 또는 구조물 등의 시설을 훼손한 때
3.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시설 사용이 불가능한 때
4. 그 밖에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제11조(손해배상) 관람자 및 사용자가 고의나 과실로 전시품, 시설물 등을 파손하거나 훼손하는 경우에는 이에 상당하는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12조(위탁관리운영) ① 시장은 과학관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기술과 능력을 갖춘 기관, 법인, 단체에게 과학관을 위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과학관을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수탁자와 위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③ 수탁자는 시장과 협의하여 과학관 관리운영에 필요한 각종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

제13조(경비지원) 시장은 필요한 경우 수탁자에게 과학관의 운영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4조(지도·감독) ① 시장은 과학관의 운영 전반에 관하여 수탁기관을 지도·감독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운영과 관련하여 위법 부당한 사항, 운영부실 등을 발견한 경우에는 경고, 시정명령, 예산지원 중단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5조(위탁의 취소)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과학관의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운영능력이 미흡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2. 수탁자가 계약 및 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한 경우
3. 공익상 위·수탁관리를 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인천광역시 어린이과학관의 관람료(제6조 관련)

구분	상설전시관		4D 영상관	비고
	개인	단체 [20명 이상]		
어린이	2,000원	1,500원	1,000원	▪ 7세 ~ 12세
청소년 및 군인	2,000원	1,500원	1,000원	▪ 13세 ~ 19세 ▪ 전투경찰 의무경찰 경비교도 포함
어른	4,000원	3,000원	3,000원	▪ 20세 ~ 64세
<p>[비고] ▪ 4D 영상관은 상설전시관 관람객에 한하여 입장가능</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획전시 별도요금 부과</li> <li>▪ 20명이상 단체 인솔자 1명 무료 관람</li> </ul> <p>* 단, 무료관람 및 요금감면은 입장시 신분확인을 위한 증빙서류를 제시한 자에 한함</p>				

[별표 2]

인천광역시 어린이과학관 부대시설 사용료(제9조 관련)

층수	시설명	면적[m <sup>2</sup> ]	사용료	비고
1층	강당	329.09	300,000원	▪ 방송시설/무대/객석180
	카페테리아	131.05	입찰 및 협의결정	▪ 연간 위탁운영
	기념품 판매소	132.84	입찰 및 협의결정	▪ 연간 위탁운영
	기획전시실	711.83	1,000원/m <sup>2</sup>	▪ 무빙월/분할대관가능
2층	2군 육감칠감 워크샵	63.58	100,000원	▪ 프로젝터/좌석38
	3군 그린실험실	86.13	130,000원	▪ 프로젝터/좌석41
3층	4군 Live Science	46.13	70,000원	▪ 프로젝터/좌석61
	4군 사이언스 실험실	17.64	30,000원	▪ 프로젝터/좌석30
옥상	야외 공연장	993.99	100,000원	▪ 무대/객석240
<p>[비고] ▪ 대관료는 과학관 휴관일을 포함하여 적용한다.</p> <p>▪ 대관료 부과는 대관준비 및 철거기간을 포함 1일 단위(9~18시)로 하되, 각 시설별로 4시간 이내 사용시 사용료의 1/2을 경감할 수 있다.</p> <p>▪ 하절기(7월~9월) 및 동절기(12월~2월)에는 냉·난방기 운영에 따라 상기 대관료의 50%를 할증하여 적용한다. (야외 공연장 제외)</p>				